



이민자와 난민자를 위한 정부보조 일리노이주 가정폭력 피해자

PUBLIC ASSISTANCE FOR IMMIGRANT SURVIVORS OF DOMESTIC VIOLENCE IN ILLINOIS (Korean version)

나는 비시민권자이다.
나는 가정폭력 상태에서 빠져 나오려고 한다.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겠는가?

만일 당신이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 현금과 의료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 만일 당신이 영주권자일 경우:
- “여자에게 가한 폭행법”에 의하여 진정서를 제출했을 경우:
- 법적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가족의 일원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을 경우: 혹은
- 출국/추방의 취소를 위해 서류를 신청했거나 혹은 승인을 받았을 경우.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나?

미국에 언제 입국했든지 당신은 다음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만일 당신이 저소득자이며 자녀들이 있다면, 필요 가족에게 주는 임시보조 (TANF) 현금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만일 당신이 장애자이고 65 세나 그이상의 연장자라면, 연장자, 맹인과 장애자를 위한 보조 (AABD) 현금보조를 받을 수 있다;
- 만일 당신이 일을 할 수 없는 홀로된 성인이라면 과도기에 주는 현금 보조 (Transitional Assistance) 를 받을 수 있다.
- 의료보조 (Medicaid) 와 아동 의료보조 (KidCare) 를 포함한 의료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만일 당신이 1996년 8월 22일 이후에 미국에 입국했다면, 당신이 폭력 피해 이민자이거나 다른 자격이 있는 이민자가 된 날로부터 5년 후부터 식품표 (FOOD STAMPS)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과부, 혹은 아이, 아니면 법적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아이임을 다음과 같은 경우로 증명해야 한다:

- 영주권 카드;
- I-360 “여자에게 가한 폭행법”에 따른 본인 자신의 진정서;

- I-130 가족이민비자 신청서;
- 출국 취소 혹은 추방 중지를 위한 진정서: 혹은
- 다른 공문 서류.

당신은 미국 시민권자나, 법적 영주권자, 혹은 당신과 함께 사는 가족 식구에 의해서 학대를 당했다는 증명을 해야한다: 혹은

당신이 미국 시민권자, 법적 영주권자 혹은 함께 사는 가족 식구에 의해서 학대를 당한 사람의 부모 혹은 아이임을 다음의 서류로서 증명해야한다:

- “여자에게 가한 폭행법”에 따라서 입증된 본인 자신의 진정서 (I-797);
- 가해자가 피해자의 근처에 가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 혹은 가해자의 범죄 판결문;
- 경찰보고서 혹은 진단서류 혹은 학대를 문서화한 다른 서류;
- 가정폭력 상담소 혹은 다른 사회사업기관의 진술서;
- 학대사건을 아는 친구, 가족, 이웃, 혹은 다른 사람들의 선서한 진술서; 혹은
- 본인 자신의 선서한 진술서;
- 다른 공문 서류들.

당신은 “학대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것을 증명해야한다. 예를 들면, 자립하는데 필요한 도움, 가해자를 피하고, 잃어버린 재정적 도움을 되찾고, 학대 때문에 잃어버렸던 직업을 회복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고, 혹은 아이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도움, 그리고 그 외의 도움 등을 말한다.

그리고,

당신은 가해자로부터 별거하거나 보조 후 일개월 이내로 별거할 계획임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불법 체류자라도, 당신의 미국 시민 혹은 자격있는 이민자 아이들을 위해서는 필요가족을 위한 임시보조 (TANF), 식품표 (FOOD STAMPS), 아동 의료보조 (KidCare), 부녀자, 유아와 아동들 (WIC) 식품보충물 혹은 어떤 다른 프로그램의 보조라도 받을 수 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아이만을 위한 도움을 요구할 때는, 일리노이주 휴먼서비스국의 케이스워커라도 그는 당신의 이민신분에 관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이민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임신부라도 태아기 의료치료 (PRENATAL CARE)와 워크 (WIC) (부녀자, 유아와 아동들) 식품보충물을 자신과 자기의 유아를 위해서 받을 수 있다

**어느 누구든지 응급치료와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의 예방주사를 본인들이나 아이들을 위해 받을 수 있다!**

현금, 식품과 의료보조를 받으려면 지역 사회에 있는 일리노이주 휴먼서비스 국으로 가십시오.

만일 가정 폭력에 관해서 누구와 대화하고 싶으면 다음의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1-877-863-6338 혹은 1-800-799-7233
(쿡 카운티) (쿡 카운티 외부)

더 자세한 정보를 입수 하시려면 일리노이 이민 난민 권의 옹호에 연락하십시오:
(312) 332-7360; 팩스: (312) 332-7044; 이메일 주소: info@icirr.org